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3 선고 2019가합1044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채윤주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E조합 구좌번호 55번, 56번 지분에 관하여 2016. 8. 9. 체결된 지분양도 ·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조합에게 구좌번호 55번, 56번 지분에 관하여 D과 2016. 8. 9. 체결된 지분양도 · 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D에게 2011. 11. 3.경부터 2014. 12.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269,239,800원을 대여하고, D이 사용한 2012년 12월분부터 2014년 3월분까지의 원고 명의 신용카드대금합계 27,736,543원을 D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결과 D에 대하여 296,978,343원의 채권이 있었다.

2) D은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754, 3159(병합), 3163(병합), 2018고단1959(병합)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A은 위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 A에게 296,978,343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배상명령(대전지방법원 2017초기1018호)이 발령되었다.

나. 원고 B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B는 D에게 2017. 3. 10. 30,000,000원, 2017. 5. 8. 29,700,000원, 2017. 5. 18. 12,000,000원, 2017. 5. 27. 20,000,000원, 2017. 5. 29. 11,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D은 2015. 6. 16.부터 2016. 7. 31.까지 위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 합계 15,601,617원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5. 6. 5. 위 원고의 배우자 F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도 할부대금 25,659,7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2) 원고 B는 2015. 1. 9. D, G과 LPG가스 소매업체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D이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은 2015. 8. 5.경부터 2016. 5. 31.까지 432,000,000원, 2015. 3. 31.부터 2015. 7. 17.까지 63,723,765원을 횡령하였다.

3) 원고 B는 위 1)2)항 금원에 관하여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항 기재 횡령 금액 중 위 원고의 지분비율에 의한 165,241,255원과 1)항 기재 금원 중 대여금 125,961,317원을 합한 291,202,572원 가운데 D이 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00,000,000원을 위 원고 채권의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214,379,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006호)이 선고되어 2019. 9. 11.경 확정되었다(이하 원고들의 D에 대한 위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지분 양도 등

1) 엘피지 가스판매업자들의 비용절감과 안전한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나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6. 5. 1.경 천안시, 아산시, 세종시 관내 엘피지가스 판매업체들 중 일부가 모여 E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소외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각 소유한 구좌수에 따라 지분주가 된다. 소외 조합 설립 당시 총 54구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4구좌는 1개의 지분을 구성하며, 1개의 지분주는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가지는데, 최초 발기인 조합원은 4구좌 미만으로 소유하여도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2) 한편, 소외 조합 설립일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2016. 7. 7.경 소외 조합과 관련1) 하여 주식회사 H(이하 ‘H’)가 설립되었다. H의 임원들은 소외 조합의 구성원들로 되어 있고, H의 정관에 규정된 구좌별 지분주의 권리, 권한 등은 소외 조합의 정관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3) D은 엘피지 가스판매업체인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외 조합의 조합원 지분 총 64구좌 중 구좌번호 55번, 56번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D은 2016. 8. 9.경 J을 통해 알게 된 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1구좌 당 8,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여, 2017. 6. 15. 이 사건 각 구좌의 명의인이 피고로 변경되었다.

4) 그 후 피고 명의 이 사건 각 구좌는 소외 조합의 사정에 의해 조합원이자 H의 사내이사였던 K으로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2018. 8. 28. 다시 조합원이자 H 대표이사였던 L 명의로 변경되었다. 다만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각 구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피고로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의 배당금 수령

피고는 2016.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좌에 대한 배당금으로 합계 68,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D의 무자력

한편 D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양도할 경우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조합과 H 설립을 컨설팅한 M의 중개에 의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한다.

나)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N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5호증과 M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과 J을 모두 알고 지내던 M는 소외 조합과 H의 설립 과정에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였다. D은 당초 소외 조합 설립 당시의 발기인 조합원은 아니었으나, 조합 설립 후 M 등을 통해 소외 조합의 구좌를 소유하게 되고 조합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2)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자 H의 대표이사였던 N과 피고의 남편 J이 이 사건 양도행위 이후인 2017. 7. 12. 만나 나눈 대화 내용에 따르면, J은 D을 알게된지 얼마 되지 않아 2016. 3.경 D에게 도박 자금으로 3,8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D의 예상과 달리 M에게 매도를 부탁한 가게(D이 운영하던 가스업체를 지칭한 것으로 보임)가 염가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J에 대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J은 M를 통해 D이 소외 조합에 대한 구좌를 피고 명의로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J은 위와 같이 D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D 소유의 천안시 O빌라가 경매 진행중인 사정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지분을 양수할 경우 D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될 것 역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M는 J에게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을 중개할 당시, D이 최고급 사양의 외제차를 여러 대 타고 다니고 돈을 풍족하게 써 굉장한 자산가인줄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M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지분을 급하게 처분하고자하여 정상적인 가액인 1억 원보다 적은 8,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D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하였다는 것인데, D의 재력이 풍부했다면 굳이 이 사건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급하게 처분하거나 도박자금을 지속적으로 빌렸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어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J과 N의 대화에 의하면, J은 자신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M로 하여금 조속히 D의 가게를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M는 D이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M는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을 중개하고 D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이외에 소개료 명목의 금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 각 지분 양도가액이 1억6천 만원에 이르는 점, M가 D에게 이 건과 다른 계약을 중개하고 3,000만 원의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쓰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M와 D 사이에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취소 및 그 통지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조합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배당금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을 소유한 이후 소외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6,800만 원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법리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한 이후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분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채무자 D의 책임재산은 이 사건 각 지분이었을 뿐, 수익자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배당금 상당액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지분에 관한 양수계약을 취소하는 이외 그 배당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원고들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피고의 고유재산과 희석되어 ‘원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원, 판사 양지혜, 판사 권종현

1) 소외 조합과 H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인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